

광주시 “정율성 사업 위법 없다”…보훈부 권고 거부

보훈부 “중단 안하면 시정명령”
광주시 “35년 간 추진 정부 사업”
광주 남구·동구·화순군 대책 검토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의 즉각 중단을 권고한 11일 오후, 광주 동구 불로동에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작업이 멈춰 있다.

광주시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와 시정 명령 방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오히려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함께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이날 “보훈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화순군도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그가 나고 자란 광주 남구와 동구, 화순군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정율성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관과 최근 보수단체 회원이 훼손한 흉상 등을 갖춘 정율성로(路)가 설치돼 있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이,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들어서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내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권고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들에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정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들에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정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곳곳 난립 정당 현수막 철거 동별로 4개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

광주시, 조례 개정 일제 정비...정치권과 마찰 예상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광주 도심 곳곳에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이 일제히 정비된다.

도로 변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으로

교통방해 등 위험이 뒤따른다는 지적(광주일보 3월14일자 6면)에 따라 광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에 나선 것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

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함께 12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간 현수막을 정비한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서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로 4개까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 등을 위해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나 신호기·가로수 등에 높이 2m 이하로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정당, 공동주택 시행사 등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조례 내용이 일부 충돌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따른 이의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지정 게시대 게시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장소, 개수 등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보고 광주시 개정 조례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가장 먼저, 광주보다 엄격하게 정당 현수막(선거구별 4개)을 제한한 인천시 조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들에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정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000만 뷰



재미와 감동

김도영

하을

YouTube

광주일보

소크라테스

전남 혁신어촌 바다 이야기 - 여수 안포 ▶11면

완전체 축구 대표팀 유니지와 평가전 ▶18면

신 팔도명물 - 영암 고구마 '好好'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3년도 전라남도 SOC확충 올해도 지속된다!

2023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7년 연속 1조원 이상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열다!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